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59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 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2일간(2026. 4. 30. ~ 2026. 6. 1.)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4층 핵심정책추진단(☎ 02-820-1080)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I.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안) 조서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14,637.7	-	14,637.7	

■ 지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면적	결정사유
신 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14,637.7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14,637.7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3,533.44	24.1	
	도 로	3,533.44	24.1	
획 지	소 계	11,104.26	75.9	-
	획 지	11,104.26	75.9	

3.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37.70	-	14,637.7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886.12	감) 8,358.73	2,527.39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51.58	감) 2,745.53	1,006.05	6.9
	준주거지역	-	증) 11,104.26	11,104.26	75.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대방동 588-7 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45.53	-	

4.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 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4	6	국지 도로	170	신대방동 607-5	신대방동 602-15	일반 도로	서고354호 (1990.10.31.)	신대방길
변경	중로	3	(1)	12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05	신대방동 586-13	신대방동 597-1	일반 도로	서고570호 (1988.09.20.)	신대방16길
변경	"	2	(2)	9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52	신대방동 592-7	신대방동 591-30	일반 도로	서고949호 (1988.12.12.)	신대방16길 도로선형정비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144	중로3-(1)	- 도로 변경 - 폭원: 6m → 12m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변경	소로3-	소로2-(2)	- 도로 변경 - 폭원: 6m → 9m	
기정	소로3-	"	- 도로 선형 정비 - 폭원: 6m	실제 폭원이 6m 미만인 일부 구간을 6m로 확폭하여 도로 선형 정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기준	면적(㎡)	비 고
관리사무소	획지	10㎡+(계획세대-50)×0.05㎡이상	30.40	
경비실/MDF실/방재 실		-	58.00	
주민공동시설		458세대 × 2.5㎡ × 1.25 = 1,431.25㎡이상	1,431.25	
소계		-	641.80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	245.80	
경로당		1- 1,000 세대 이상 : 500㎡+세대*2.0㎡ 이상 설치	198.00	
어린이집		2- 1,000세대 미만 : 세대*2.5㎡ 이상 설치	198.00	
작은도서관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하는 면적	-	
주민운동시설		4-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포함하는 면적	-	
기타공동시설			-	
합계			2,161.45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 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14,637.7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원	80	-	-	80	-	-

7. 기존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14,637.7	획지	11,104.26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원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노인복지 시설	60% 이하	- 기준(허용) - 제2종(7층) : 200%이하 - 제3종 : 250%이하 - 가중평균 : 212.36%이하 • 상한:400%이하	124m 이하/ 3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58세대(임대주택 포함)
-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458세대	100.0	-
60㎡ 이하	소 계	201세대	43.9	-
	39㎡	27세대	5.9	임대주택 24세대 포함
	59㎡	174세대	38.0	임대주택 107세대 포함
60㎡~8 5㎡ 이하	소계	257세대	56.1	-
	84㎡	257세대	56.1	임대주택 33세대 포함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 164세대

구 분	합 계	공공기여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추가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64	44	59	61	100.0
39㎡	24	-	24	-	14.6
59㎡	107	35	23	49	65.2
84㎡	33	9	12	12	20.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지정으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구 분	건축선 지정 내용	계획목표
	도로변 (시흥대로, 수타방길, 산대방16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 설치 (3m)
공공보행통로	◦ 해당없음		
보차혼용통로	◦ 해당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지정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유도		

1) 용적률 계획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용적률 산정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증가 용적률 (%)	가중평균 증가용적률 (%)
	현 황	변 경		기 준	상 한	가중평균		
획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200	400	212.36	200	187.64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53	250	400		150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

구 분	용도지역		획지면적 (㎡)	증가용 적률의 50%	순부담기준		순부담계획	
	변경전	변경후			비 율 (%)	면 적 (㎡)	비 율 (%)	면 적 (㎡)
획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100%	25.00	1,960.51	23.50%	2,608.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53	75%	18.75	643.96		
	소 계		11,104.26	93.82%	23.45	2,604.4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사업 면적	획지 (공동주택)	소계	공공시설등 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㉔)	획지 내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㉕)	
						정비기반 시설	공공시설			
				준주거		㉖ 도로	대지지분			환산부지
			14,637.7	11,104.26	5,456.67	3,533.44	1,131.59	791.64	2,245.45	-
순부담	획지	준주거	• 공공기여면적 : (가) 정비기반시설(도로)+(나) 공공임대주택+(다)지역필요시설 = 685.75㎡ + 803.99㎡ + 1,119.24㎡ = 2,608.98㎡ •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면적 / 대지면적 = 2,608.98 / 11,104.26 = 23.50%≥ 23.45%							
정비 기반 시설	도 로		• 계획 순부담면적 : ㉖ 3,533.44㎡ - ㉔ 2,245.45㎡ - ㉕) = 1,287.99㎡ • 가중치 적용 순부담면적 : 1,287.99㎡ x 0.5324 = 685.75㎡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12.97%/400% = 0.5324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953.92㎡ x 200%) + (334.07㎡ x 250%)} / 1,287.99㎡ = 212.97% • 사업부지 용적률 : 400%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소 계	• 685.75㎡							
공공 시설 등	획지	(나) 공공 임대 주택	• 대지지분 = 803.99㎡ (임대주택면적÷전체면적)X대지면적 =(6,795.63㎡÷93,857.28㎡)X11,104.26㎡							
		(다) 지역 필요 시설 (데이 케어 센터)	① 대지지분 = 167.08㎡ (시설면적÷전체면적)X대지면적 =(1,412.18㎡÷93,857.28㎡ X 11,104.26㎡			② 건축물환산면적 = 396.83㎡ = a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b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원/㎡) - a= (시설면적(지상) x 설치비용 기준) + (시설면적(지하) x 설치비용 기준) = 4,500,069,155 원 - b=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 11,340,000원/㎡				
		(라) 지역 필요 시설 (시니어 라운지)	① 대지지분 = 160.52㎡ (시설면적÷전체면적)X대지면적 =(1,356.80㎡÷93,857.28㎡) X11,104.26㎡			② 건축물환산면적 = 394.81㎡ = a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b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원/㎡) - a= (시설면적(지상) x 설치비용 기준) + (시설면적(지하) x 설치비용 기준) = 4,477,143,500 원 - b=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 11,340,000원/㎡				
	소계	(나)+ (다) + (라) = 1,923.23㎡								

- a)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3,855,455원/㎡(2,000㎡ 미만, VAT 제외), 노인복지센터(시니어라운지) 4,070,000원/㎡(1,000㎡ 이상 3,000㎡ 미만, VAT 제외)
 b)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24.09.) (준주거 11,340,000원/㎡)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옥상에 수목 식재하여 옥상정원 설치 • 생태순환시스템 고려 • 자원절약형 배치기법(풍향경관 고려)	-
재난 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개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가칭)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현황) 229세대 증) 229세대 계획) 458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 이내 대상지 서측 대림중학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협의 후 반영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신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14,637.70	획지	11,104.26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일원

1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규모		세 대 수	비 고
				전 용	공 급		
신규	획지	11,104.26	-			44세대	
				59.95	83.95	9	
				84.95	118.95	35	

2) 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구 분	확보기준	확보내용
세대수 기준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임대 주택 건설	◦ $393\text{세대} \times 15\% = 58.9\text{세대(기준)}$ ≤ 59세대(확보)
규모 기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59\text{세대} \times 30\% = 17.7\text{세대(기준)}$ ≤ 24세대(확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은 전체 세대수에서 제외

3) 준주거지역 추가확보 임대주택

구 분	확보기준	확보내용
세대수 기준	◦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임대주택 추가확보	◦ $96.52\% \times 50\% = 48.26\%(기준)$ ≤ 50.42%(확보)

1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 녹지공간의 확보하여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2. 생태네트 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 Ⅲ으로 녹지평가지표 1	·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등 계획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기 조성지역으로 평탄한 지역임 · 향후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	· 현 지형을 고려한 건축배치 검토로 지형변화 최소화계획 수립	
6.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28.43% 이상	○	· 공동주택 및 그 외 연면적 생태면적률 28.69%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7.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8.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9. 에너지 · 온실가스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10. 바람, 열	바람길 확보	○	·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옥상녹화,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	
1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1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진동 최소화[가설방음판넬,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13. 경관	Skyline보전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예상	·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녹지공간 확보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조경녹지를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인 경관 조성	
1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휴식 및 여가공간의 확보	
1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사업시행 후 북측 일부 병원 및 다가구주택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나 폐업 및 거주자가 없는 상태임	· 배치계획을 통한 일조시간 최대한 확보 및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	
16. 인구 및 주거	인구 및 주거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 458세대 계획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차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대림삼거리, 대림사거리
	-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 사업지 남측 신대방길 (B=6.0m → 12.0m) - 사업지 북동측 신대방16길 (B=6.0m → 9.0m)
진·출입동선	① -	◦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 - 출입구 남서측 신대방길(양방2차로)에 접속 (3지교차로 형성)
	-	◦ 드랍존 지하설치
	-	◦ 사업지 진출입부 회전반경 확보 (R=6.0m)
	-	◦ 사업지 남서측 신대방길 유색포장 설치
보행 및 대중교통	-	◦ 사업지 내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B=3.0m)
	-	◦ 사업지 주변도로 보도설치 (B=2.0m~3.0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 509대 ◦ 주차수요대수 : 547대 ◦ 계획주차대수 : 669대 (자주식 100.0%) ◦ 법정주차대비 131.4%, 주차수요대비 122.3%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경고등, 반사경 설치
	-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 관할경찰서 및 관련부서 별도 협의 후 시행
	-	◦ 주정차 금지 단속 및 방범용 CCTV 설치 (1개소)
	-	◦ 교차로 알리미 설치 (2개소)

Ⅱ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14,637.7	-	14,637.7	

■ 지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신 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신대방동 588-7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37.70	-	14,637.7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866.12	감) 8,358.73	2,527.39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51.58	감) 2,745.53	1,006.05	6.9
	준주거지역	-	증) 11,104.26	11,104.26	75.9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53	-	

나. 도시계획시설의 관한 결정(변경)(안)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4	6	국지 도로	170	신대방동 607-5	신대방동 602-15	일반 도로	서고354호 (1990.10.31.)	신대방길
변경	중로	3	(1)	12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05	신대방동 586-13	신대방동 597-1	일반 도로	서고570호 (1988.09.20.)	신대방16길
변경	〃	2	(2)	9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52	신대방동 592-7	신대방동 591-30	일반 도로	서고949호 (1988.12.12.)	신대방16길 도로선형정비

※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144	중로3-(1)	• 도로 변경 - 폭원: 6m → 12m	•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변경	소로3-	소로2-(2)	• 도로 변경 - 폭원: 6m → 9m	
기정	소로3-	〃	• 도로 선형 정비 - 폭원: 6m	• 실제 폭원이 6m 미만인 일부 구간을 6m로 확폭하여 도로 선형 정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구 역		획 지		위 치
	명 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신 설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14,637.70	획지	11,104.26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일원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안) 조서

(1) 지정용도

구 분		세부용도
지정용도	저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의원,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2)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불허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0]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2) 건축물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획지 (준주거지역)	비 고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가중평균 용적률) : 212.36% 이하	
	상한	· 준주거 : 40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5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높 이		124m 이하	

3) 건축물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산 정 내 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지정으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구 분	건축선 지정 내용	계획목표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 설치 (3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

구 분	산 정 내 용
공개공지	▶ 시흥대로변 위치 지정
침상형공지	▶ 대림삼거리역 지하연결보도와 접한 침상형공지 위치 지정

(2) 공공기여

구 분	용도지역		획지면적 (㎡)	증가용 적률의 50%	순부담기준		순부담계획	
	변경전	변경후			비 율 (%)	면 적 (㎡)	비 율 (%)	면 적 (㎡)
획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100%	25.00	1,960.51	23.50%	2,608.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53	75%	18.75	643.96		
	소 계		11,104.26	93.82%	23.45	2,604.47		

구분		소계	공공기여 내용			순부담계획	
			공공임대주택	지역필요시설	도로	순부담면적	순부담율
획지	준주거지역	2,608.98	803.99	1,119.24	685.75	2,608.98	23.50

Ⅲ.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	증) 14,637.7	14,637.7	

■ 결정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신 설	-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 신대방동 588-7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637.70	-	14,637.7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886.12	감) 8,358.73	2,527.39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51.58	감) 2,745.53	1,006.05	6.9	
	준주거지역	-	증) 11,104.26	11,104.26	75.9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8,358.73	-	◦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45.53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안)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4	6	국지 도로	170	신대방동 607-5	신대방동 602-15	일반 도로	서고354호 (1990.10.31.)	신대방길
변경	중로	3	(1)	12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05	신대방동 586-13	신대방동 597-1	일반 도로	서고570호 (1988.09.20.)	신대방16길
변경	〃	2	(2)	9	〃	〃	〃	〃	〃	-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52	신대방동 592-7	신대방동 591-30	일반 도로	서고949호 (1988.12.12.)	신대방16길 도로선형정비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144	중로3-(1)	• 도로 변경 - 폭원: 6m → 12m	•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변경	소로3-	소로2-(2)	• 도로 변경 - 폭원: 6m → 9m	
기정	소로3-	〃	• 도로 선형 정비 - 폭원: 6m	• 실제 폭원이 6m 미만인 일부 구간을 6m로 확폭하여 도로 선형 정비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11,104.26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11,104.26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노인복지시설) 등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정용도

구분		용 도	세부용도	비고
지정용도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의원,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지역필요시설 (노인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2) 불허용도

구분		불 허 용 도	비고
불허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0]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나. 건축물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	비고
	준주거지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212.36% 이하 ◦ 상한용적률: 4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5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높이	◦ 124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보도형	◦ 전체 가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1) 공개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시흥대로변 위치 지정	침상형공지와 공개공지 연계하여 1개소 설치
침상형 공지	◦ 대림삼거리역 지하연결보도와 접한 침상형공지 위치 지정	

2) 공공기여

구분			총환산면적 (㎡)	대지지분 (㎡)	건축물 환산면적(㎡)	순부담율 (%)	비율 (%)	제공연면적 (㎡)	비고
준 주 거	합계		2,608.98	1,817.34	791.64	23.50	100.00	9,564.61	-
	정비 기반 시설	도로	685.75	685.75	-	6.18	26.28	-	가중치 적용
	공공 시설	공공 임대 주택	803.99	803.99	-	7.24	30.82	6,795.63	44세대
		지역 필요 시설	563.91	167.08	396.83	5.08	21.61	1,412.18	데이케어 센터
			555.33	160.52	394.81	5.00	21.29	1,356.80	시니어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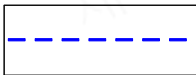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환산면적= [총 도로 면적(3,533.44㎡) - 무상양도 국공유지(2,245.45㎡)] × 가중치(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0.5324) = 685.75㎡

※ 공공임대주택은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재개발 임대주택 외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였음(용적률 증가분)

※ 감정평가금액 : '24.09. 기준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건축심의 전 공공 및 민간 입회자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총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기여 계획을 최종 수립함

다.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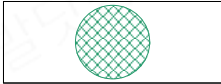
1) 건축한계선

내 용	비고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③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 조성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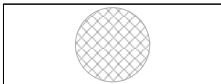
2) 전면공지

내 용	비고
①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와 차도형 전면공지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1. 보도형 전면공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전면공지 5m 이상시 그늘목식재 등 보행편익을 위해 조성한다. 2. 차도형 전면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②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 등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③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단서 및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용적률 등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전면공지의 일부가 차량 진출입로(차량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적률 등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조성 후 토지등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3) 공개공지

내 용	비고
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적용한다. ② 공개공지의 조성위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 도로 가각부, 보행 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부지에 공원, 광장, 쌈지형 공지, 공개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④ 지하철역사 출입구 등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지로 설치를 권장한다. ⑤ 공개공지의 바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⑥ 상기 지침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한 대지(자율적으로 조성한 대지 포함)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등의 완화가 부여된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용적률 등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조성 후 토지등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⑧ 도면표시 공개공지(위치지정) 	-

4) 침상형 공지

내 용	비고
① 지하철역사 출입구 등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지로 설치를 권장한다. ② 침상형 공지와 접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공간은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용도와 벽면의 1/2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셔터설치시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한다. ③ 침상형 공지는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되어야 한다. ④ 침상형 공지에는 벤치, 파고라(pergola) 등과 같은 휴게시설과 화분, 플랜트 박스 등 기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조성 후 토지등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침상형공지(위치지정) 	-

※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서」참조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2일간(2026. 4. 30. ~ 2026. 6. 1.)

○ 관련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기타사항

가.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도서」에 따름.

나. 관련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도서」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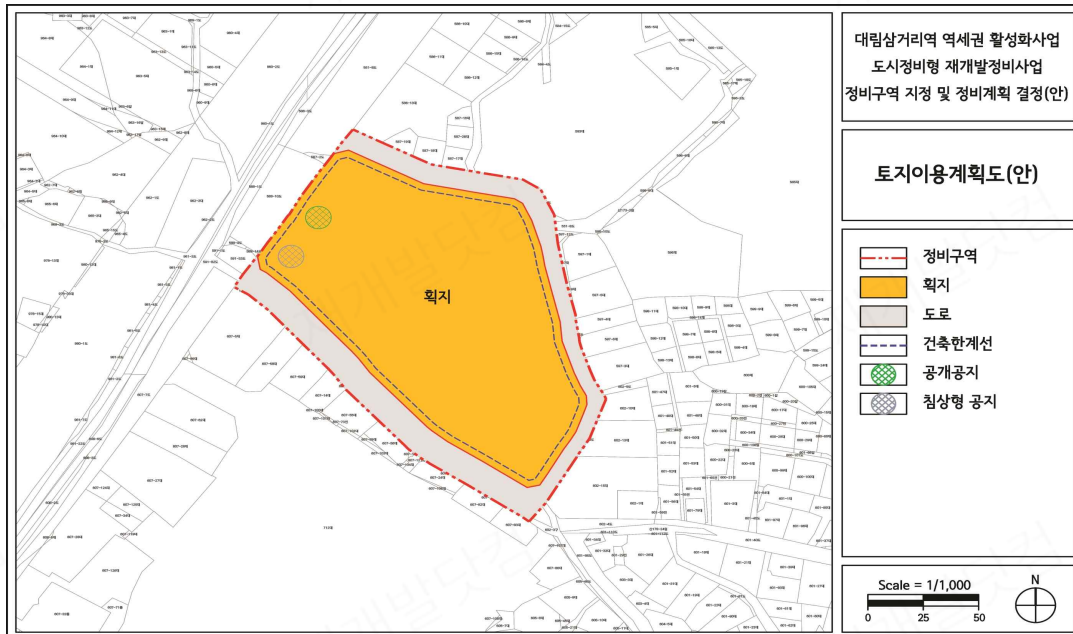
다. 본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도서는 향후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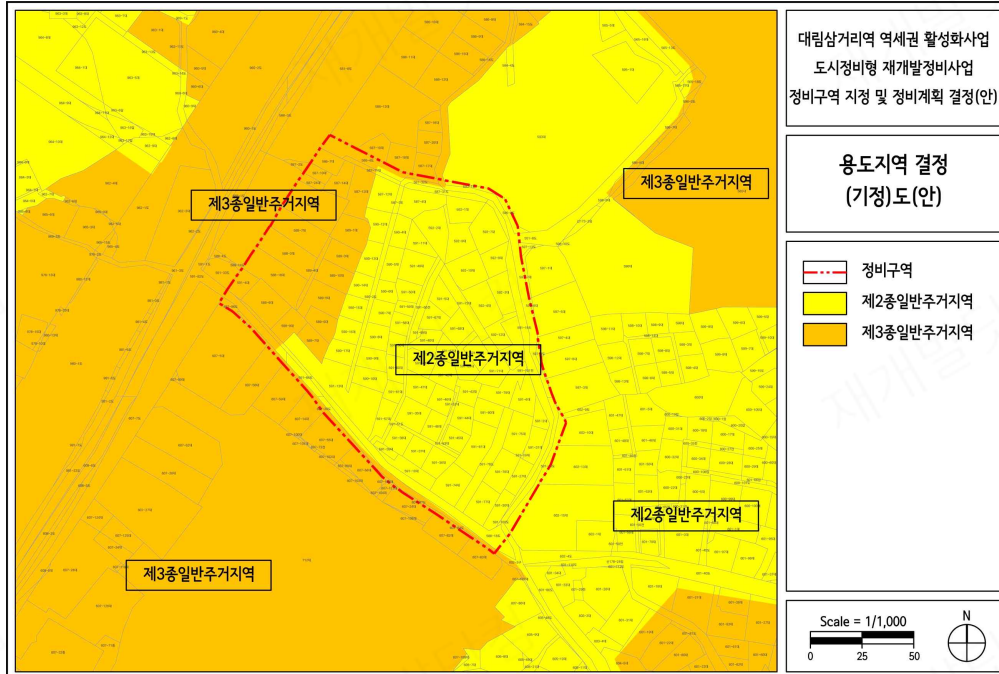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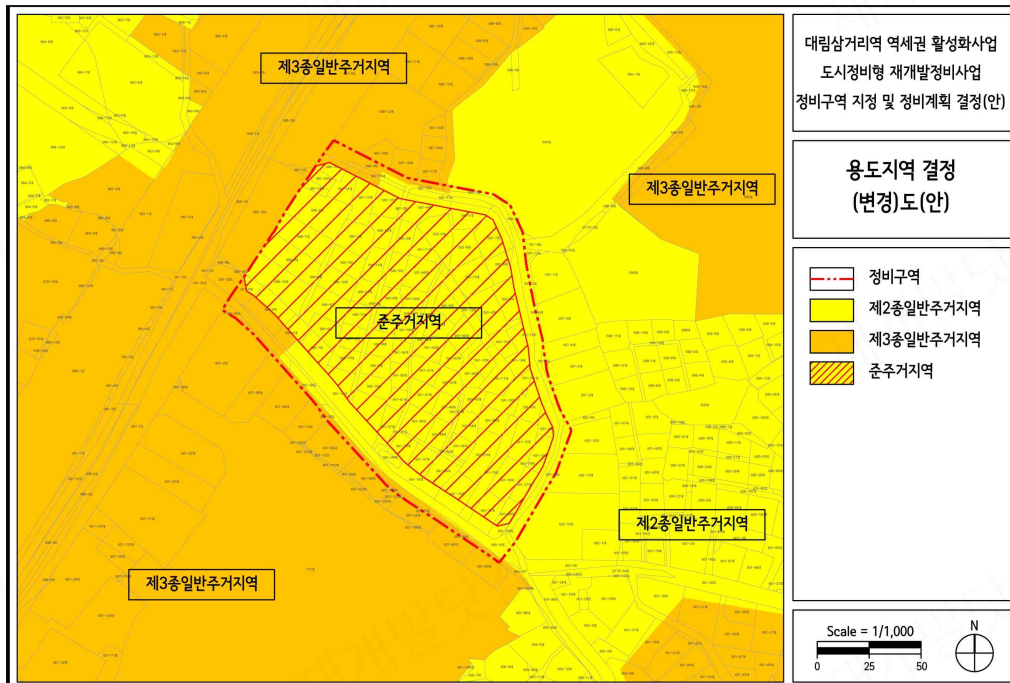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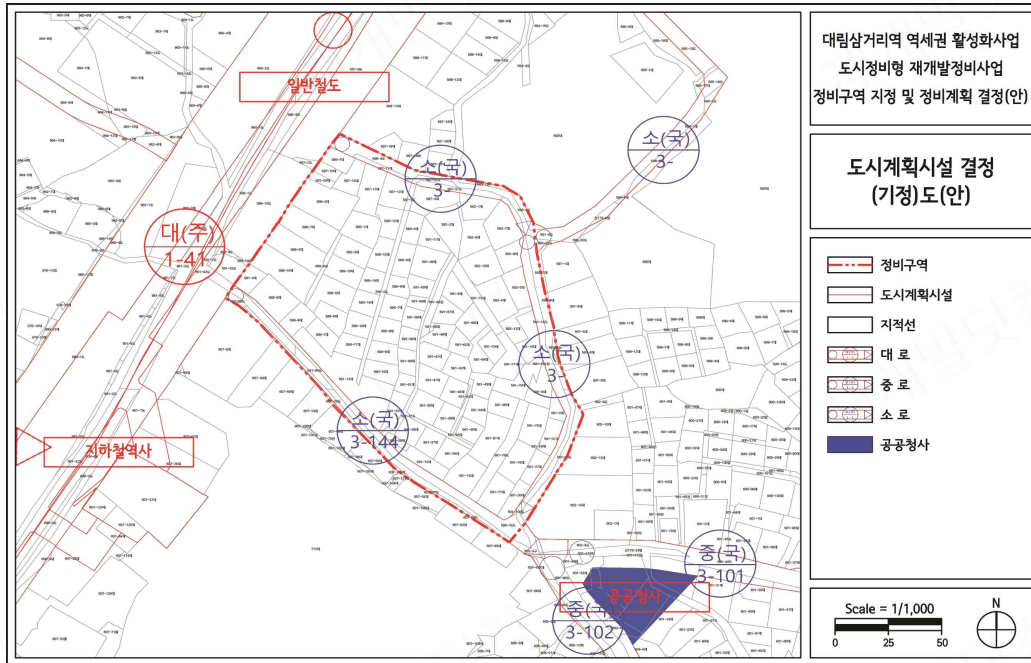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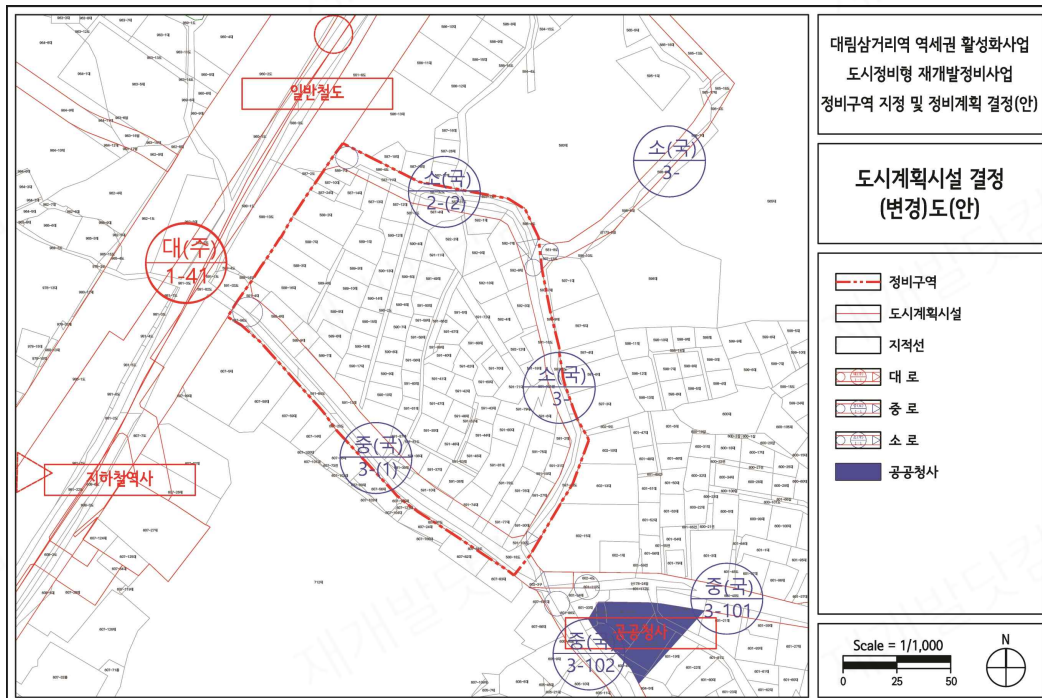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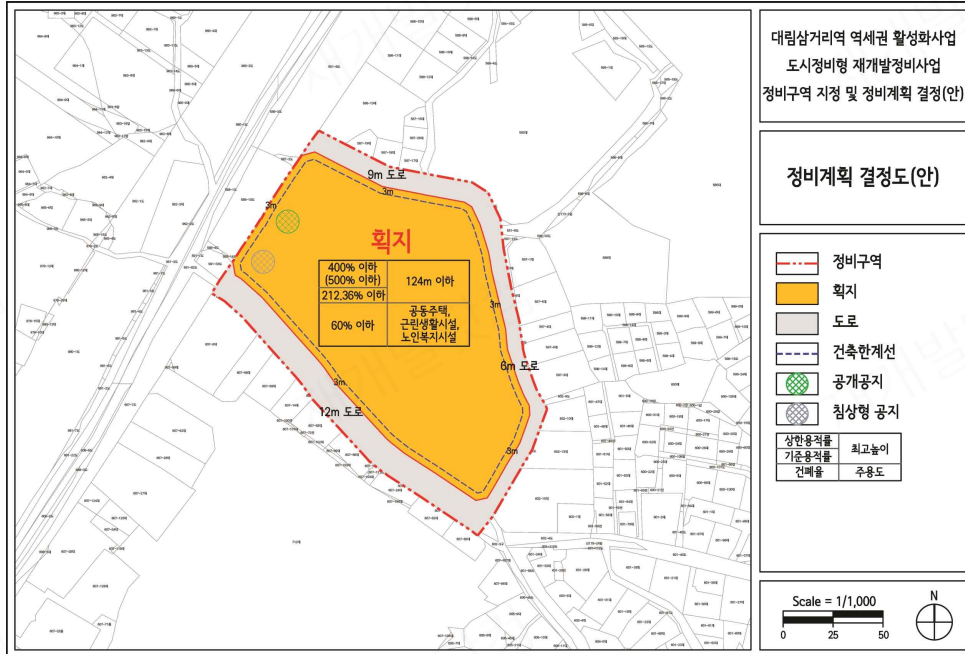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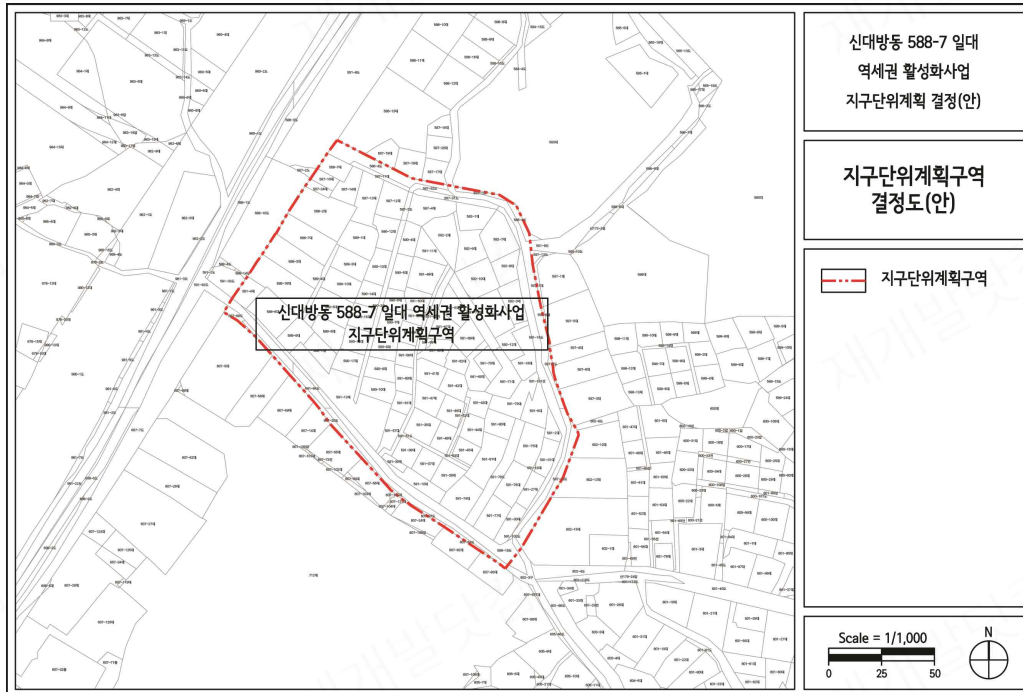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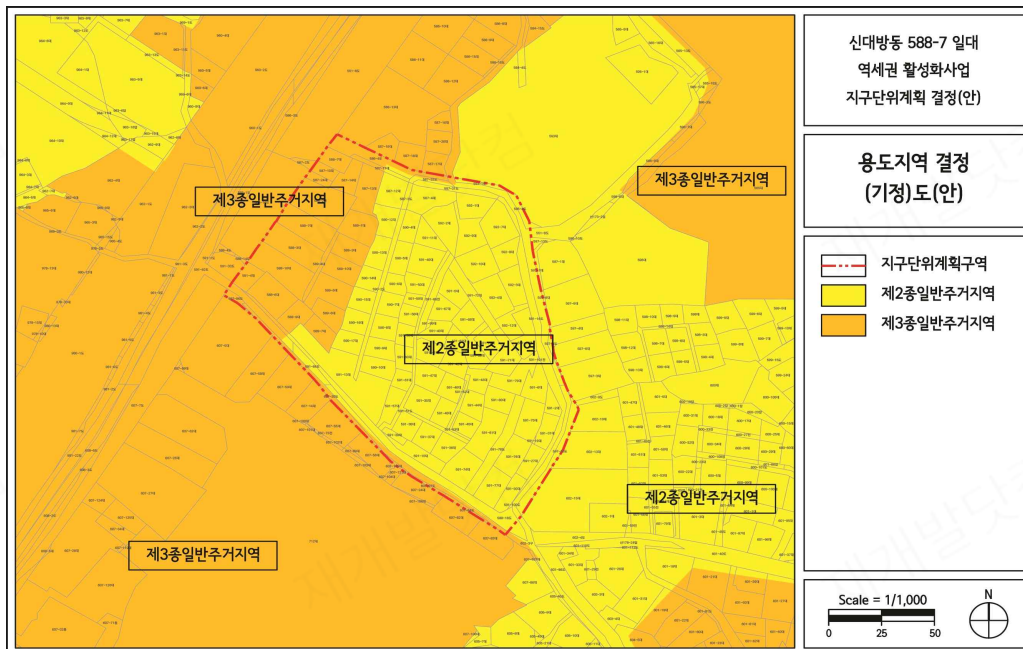


【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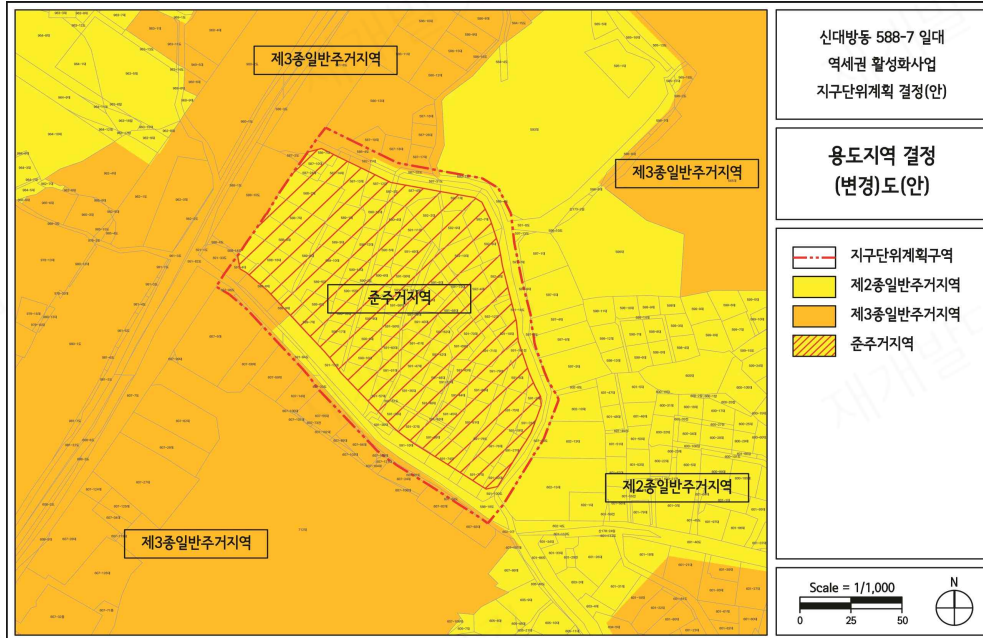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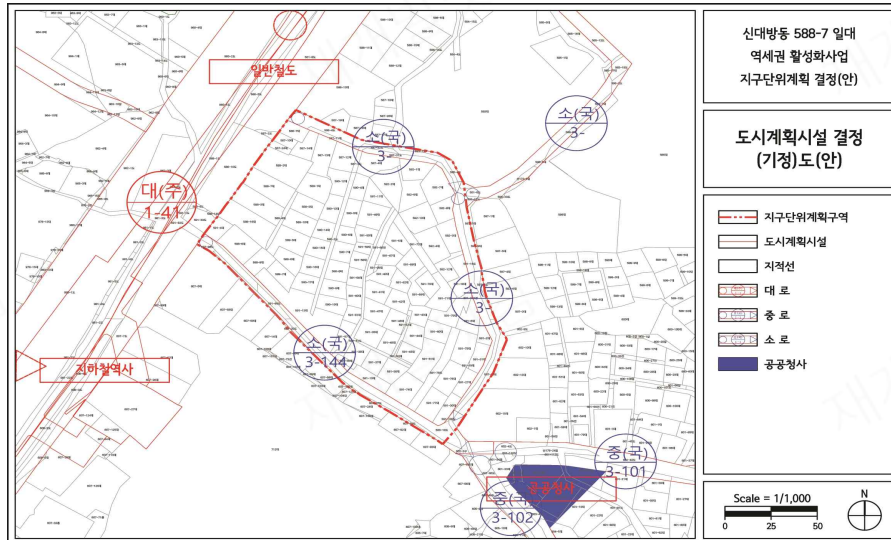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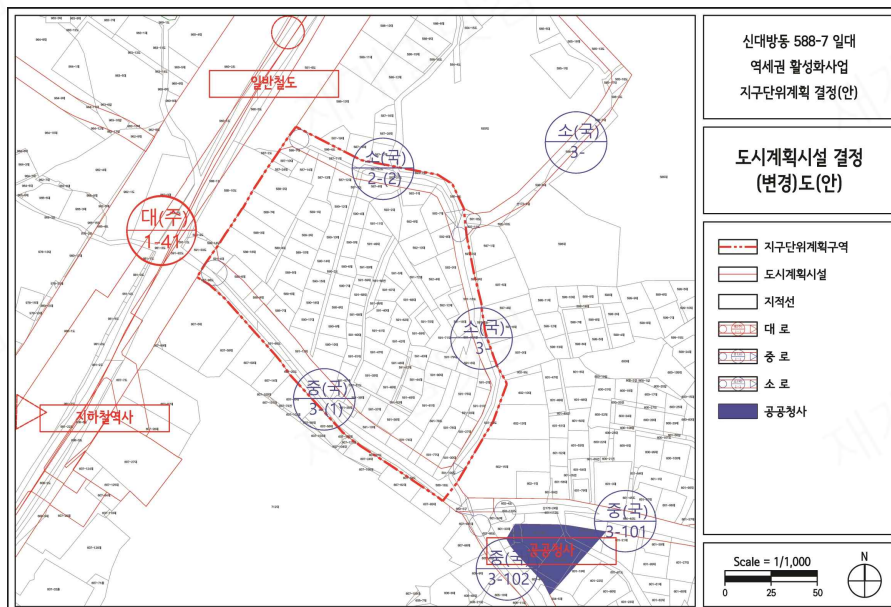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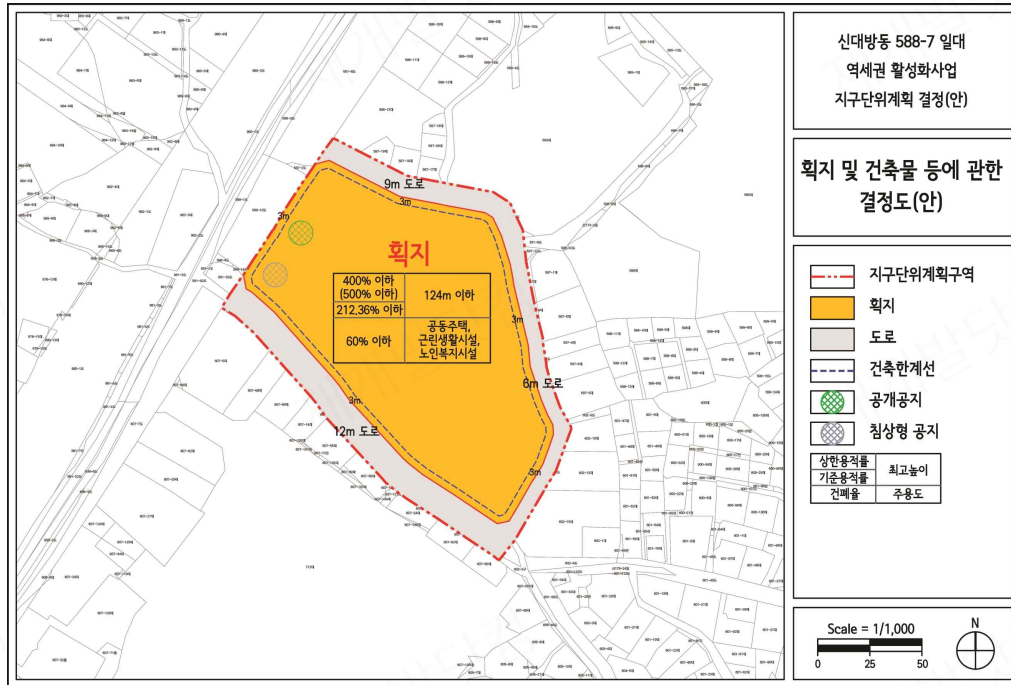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규정을 정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조문 신설 (안 제2조제6항제3호)
- 나. '국장급'을 '과장급(5급 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2조제7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징수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820-1548, FAX : 828-4316, E-mail : mabok@dongjak.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간”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지방세징수법」제1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제2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국장급”을 “과장급(5급 공무원)”으로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제4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간”을 “공무원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 지방자치단체 간 ----- -----		
③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		③ -----		

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2. (생략)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생략)

⑤ 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 라. (생략)

마.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 자. (생략)

-- 제5조-----

-----.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4.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 자.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신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생략)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⑦ ----- 과장급(5급 공무원) -----
-----.

제3조(지급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5조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① -----
-----.

1. ----- 공무원 간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제5조 -----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① (생 략)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생 략)

-----.

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

-----.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도로명 주소 :
- 연 락 처 :

내 용	의 견	비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인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할인보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할인보전금(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금액에 대한 재원)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 나.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3항)
- 다. 상품권 소멸시효(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름) 및 미사용 잔액 중 본인부담금 환급 및 환급 불가 시 공고 절차, 미환급 금액 및 할인보전금의 세외수입 귀속 기준 신설(안 제5조의3)
- 라.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간 기준 불일치에 따른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한 규정 삭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0-9324, FAX: 02-828-4340, E-mail: dongjak0103@dongjak.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사랑상품권”이란”을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으로, “동작구청장이”를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을 “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동작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5호 중 “동작사랑상품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상품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를 “구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중 “상품권운영 자금”을 “상품권운영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을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 및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동작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1.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 구청장 또는 ----- ----- ----- ----- ----- -----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 구청장----- 상품권----- ----- ----- -----
3. 삭제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 구청장----- ----- -----
가. 동작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가. 상품권-----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나. ----- 상품권----- -----
5. “사용자”란 동작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상품권----- -----
<신설>	6.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제3조(적용 범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상품권-----

----- 구로 -----.

--- 구청장-----

-----.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

----- 상품권운영자금-----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한다.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 및 -----
-----.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
-----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

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4. (생 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맹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6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구로 귀속한다.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 각 목-----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도로명주소 :
○ 연락처 :

내 용	의 견	비 고